

양자컴퓨터연구센터 규정

2008. 12. 8. 제정

2022. 2. 25. 개정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양자컴퓨터연구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2.2.25.>

제2조(사업) 센터는 차세대 양자컴퓨터 및 양자 정보 처리 기술을 위한 기초과학 연구역량을 확립하고, 세계 수준의 양자컴퓨터 연구 선도과학자 및 미래 연구인력 육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 <개정 2022.2.25.>

1. 양자컴퓨터에 관한 공동·협동 학술연구 및 기술개발 <개정 2022.2.25.>
2. 연구기기, 시설, 기반기술, 문헌 및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제공
3. 양자컴퓨터 연구 관련 세미나, 워크숍, 심포지엄 개최 <개정 2022.2.25.>
4. 학계, 출연 연구기관, 산업체와의 공동연구 및 기술지원
5. 양자컴퓨터 연구 관련 국제협력사업 <개정 2022.2.25.>
6. 기타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

제3조(소장) ① 센터에 소장을 두며, 소장은 본교 교수 또는 부교수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한다.

제4조(조직) ① 센터에 이온 포획 시스템 개발연구실, 양자알고리즘 구현 양자컴퓨터연구실, 양자센서연구실, 교육훈련실, 공동기기지원실, 자료관리실 및 행정지원실을 둔다. <개정 2022.2.25.>

② 이온 포획 시스템 개발연구실은 확장가능한 양자컴퓨터 제작을 위한 포획 시스템 개발 및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2.2.25.>

③ 양자알고리즘 구현 양자컴퓨터연구실은 단일 큐비트 조작 및 양자얽힘 실험을 통한 양자알고리즘 구현 및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2.2.25.>

④ 양자센서연구실은 이온 포획 시스템과 주사탐침현미경을 기반으로 포획된 단일 이온의 뛰어난 양자 물성과 주사탐침현미경의 공간분해능을 조합하여 양자 센서 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 <개정 2022.2.25.>

⑤ 교육훈련실은 석·박사과정생 및 관련 산업체 연구원의 교육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⑥ 공동기기지원실은 효율적인 기기 이용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⑦ 자료관리실은 센터의 각종 자료 관리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.

⑧ 행정지원실은 서무 회계와 기타 타 실에 속하지 않는 사항을 담당한다.

제5조(실장) ① 행정지원실을 제외한 각 실에 실장을 둘 수 있다. 실장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소장이 제청하여 총장이 임명한다.

② 각 실장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관장한다.

제6조(연구위원 등) ① 센터에 연구위원과 객원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위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과 비전임교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. <개정 2020.12.10.>

③ 객원연구위원은 연구 계획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중에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촉한다.

④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객원연구위원의 경우에는 연구 계획에 따라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.

⑤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은 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업무를 수행한다.

제7조(연구원 등) ① 센터에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.

②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로서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면하되, 본교 연구원 규정에 따른다.

③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과정 3학년 이상의 학생 중에서 소장이 임면한다.

④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연구위원 및 객원연구위원의 연구를 보조한다.

제8조(연구교수) ① 센터에 연구교수를 둘 수 있으며 연구교수는 소장이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제청하여 총장이 임면한다.

② 연구교수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9조(행정인력) ① 센터에 두는 행정인력은 소장이 임면한다.

② 행정인력의 보수는 센터의 자체 수입으로 충당한다.

제10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양자컴퓨터연구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22.2.25.>

② 위원회는 소장 및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.

③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다만,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사업보고에 관한 사항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센터 규정의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구위원 임면 및 객원연구위원 위촉의 동의에 관한 사항
5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

⑤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사업 계획 및 보고)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처장을 거쳐 총장에게 사업 연도 개시 후 1월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22.2.25.>

1.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
2.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
3. 운영위원 명단

제12조(경비 및 현금 출납) ① 센터의 경비는 센터 기금, 국고 보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.

② 센터의 현금출납 사무는 총무처 회계팀에서 담당한다. <개정 2018.6.20.>

제13조(존속기간) 삭제 <2022.2.25.>

제14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08. 12. 8 제정)

이 규정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18. 6. 20. 개정)

이 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0. 12. 10. 개정)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(2022. 2. 25. 개정)

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